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연월일 : 2026. 9.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이관됨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및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접수(1건) 및 불수용 결정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비규제 대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17조의2제7항”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각각 “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 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 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 까지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 자치회의 설치·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 ----- ----- ----- ----- -----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 -----.

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2. (생략)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u>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u> ③ (생략)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u>특별법 제40조제5항</u>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2. (생략) 3. 선거운동을 하거나, <u>특별법 제40조제5항</u>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생략)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특별법 제40조제5항</u>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③ (생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정치적 중립) ---- <u>법 제17조의2제7항</u>----- ----- -----.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법 제17조의2제7항</u>----- ----- 4. (현행과 같음) ② ----- -----. 1. <u>법 제17조의2제7항</u>-----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상위 및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40조

【 지방자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

개정 전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

2026. 7. 1. 조례 제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

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 등)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천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총원의 60퍼센트 이상):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총원의 40퍼센트 이내):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은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의 단임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한다.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해당 동장이 정한다.
-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해 요청받은 사항
-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받은 사항
-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 ③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 추첨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5.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다만,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 ② 제1항제5호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임이 불가하며, 임기종료 또는 해촉일부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총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촉된 위원은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위원회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의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치회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자치회의 및 주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호선될 수 없다.

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의 결위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⑥ 그 밖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숙의(宿意)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구 누리집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세운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사무국장 및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은 선임하거나 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제28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2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동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구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여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5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및 사업비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및 참석
2. 지역 자치센터 체육 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3.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연수
4.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게시판 또는 구 누리집 등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해 회계책임자로 사무국장을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제32조제1항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1. 강좌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6.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제23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다만,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는 제외한다)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②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32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기도구, 휴대용 화장지, 부채, 달력 등의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경우

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41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